

임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 고발지침

제정 2009-12-30 1
개정 2014-08-08 2
개정 2017-03-07 3

제 1 조 (목적)

이 지침은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소속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고발대상)

고발대상은 소속 임직원(퇴직자 포함), 임직원 범죄와 관련된 민간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, 공직자윤리법, 그 밖의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자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.(‘17.3.7 개정)

제 3 조 (고발주체)

- ①부서장과 감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임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표이사 또는 감사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대표이사 또는 감사담당 부서장은 제2조에 의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및 이 기준에 의하여 이를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.

제 4 조 (고발여부의 판단)

대표이사 또는 감사담당 부서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,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.

1.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
2.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.
단, 각 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.
 - 가. 200만원 이상(누계금액) 금품,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·유용한 경우(‘17.3.7 개정)
 - 나. 2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 횡령·유용 금액을 전액 원상회복(변상)하지 않은 경우(‘17.3.7 개정)
 - 다. 100만원 이상 금품, 향응 등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(‘17.3.7 개정)
 - 라. 최근 3년 이내에 금품, 향응 수수, 공금 횡령·유용,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(‘17.3.7 신설)
 - 마. 인사,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·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(‘17.3.7 신설)
3.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
4. 범죄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5.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
6.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분야와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
 - 가. 각종 수납관련 업무
 - 나. 계약관련 업무
 - 다. 자금관리 업무
 - 라. 대관 업무
 - 마. 임대관리 업무
7. 그 밖에 범죄의 횡수,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 5 조 (고발시기 및 절차)

- ①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.
- ②고발은 대표이사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,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.

제 6 조 (고발처리상황 관리)

- ①감사담당 부서장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1호 서

식에 따라 문서로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감사담당 부서장은 고발하지 아니한 건에 대해서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고발대상사건 목인에 대한 책임)

대표이사는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목인한 때에는 인사규정 제161조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지침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개정 2014.8.8)

이 규정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개정 2017.3.7)

이 규정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